

하나 외화양도성 예금증서(통장식) 특약 개정대비표

1. 시행일 : 2012년 9월 12일(수)

2. 개정내용

개정전	개정후	비 고
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 특약	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 특약	
제 1 조 ~ 제 4 조 (내용생략)	제 1 조 ~ 제 4 조 (좌동)	
제 5 조 가입금액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 \$3,000 상당금액 이상으로 합니다.	제 5 조 가입금액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 \$1,000 상당금액 이상으로 합니다.	가입조건 완화하여 고객 편익증대
제 6 조 ~ 제 11 조 (내용생략)	제 6 조 ~ 제 11 조 (좌동)	
(신설)	제 12 조 관련법규의 준용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<u>공사채등록법,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</u>	본 상품관련 법률 명시하여 고객에게 내용 명확화
제 12 조 (내용생략)	제 13 조 (좌동)	12조 신설로 조내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특약 적용 여부 : 미적용